

사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1. 12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. 1. 12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7호)
- 상 정 : 2007. 1. 23.(제11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환경보호과장 정대환)

가 제안이유
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 중 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에 대한 감량대상 사업장 지정여부를 자체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토록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나 주요내용

- 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”의 범위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함 (안 제2조제8호)
-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(주로 다류,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·판매하는 영업을 제외) 및 일반음식점영업(음식물류를 조리·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다류,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)

다 관계법령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5조(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)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)
- 「식품위생법」 제21조(시설기준), 제22조(영업의 허가 등)
-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7조(영업의 종류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군호)

- 개정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조의2제2호의 규정이 개정됨으로 인해 사천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
- 「식품위생법」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(다류, 주류, 아이스크림류 제외)으로 하여 음식물류 감량의무사업장을 정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
-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,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